

예 산 총 칙

2012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05,578,301	15,167,349
일반회계	434,104,874	13,023,146
특별회계	71,473,427	2,144,203
공기업특별회계	69,684,612	2,090,538
상수도사업특별회계	22,902,612	687,078
하수도사업특별회계	46,782,000	1,403,460
기타특별회계	1,788,815	53,664
지하수특별회계	290,000	8,700
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	1,389,510	41,685
기반시설기타특별회계	109,305	3,279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,797,16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8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